

일반공급 검수서류

■ 구비서류 체크사항

구분	서류유형		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일반공급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• 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임감도장 인감증명서	본인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시 본인만 인정되며 제3자 대리인 접수 불가) • 용도·파트 계약용(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경증서)
	○		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알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상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 포함하여 상세 '로'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는 필수(화성시 거주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)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1.23)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(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)
		○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		○	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자녀의 견부 또는 일부 기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•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
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 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•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처측에 1년 이상 기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무주택사명서류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기옥대장등본 포함)	
	○			•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	
	○			• 소형자기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	
	○			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	○	당첨사실소명서류	청약자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(당첨사실무효확인서, 기점점수 및 청약자격확인서류 등)	
제3자 대리인 계약시	○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 비치(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)	
	○	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인감증명서	청약자	• 용도·파트 계약 위임용 (대리계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 ※ 단,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경증서	
	○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	
	○	대리인 도장	대리인	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(신청서 구비서류)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(2020.11.23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,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대한 표기 '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